

-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.
-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.
-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.
- P280 보호장갑/보호의/보안경/안면보호구를(을) 착용하십시오.

2) 대응

- P301 + P310 삼켰다면: 즉시 의료기관/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02 + P352 피부에 묻으면: 다량의 물/세정제로 씻으시오.
- P304 + P340 흡입하면: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.
-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/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21 응급조치 요령을 참고하여 처치를 하시오(4항 참고).
-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.
- P332 + P313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: 의학적인 조치/조언을 받으시오.
- P362 + P364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십시오.
-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.

3) 저장

-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십시오.

4) 폐기

-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/용기를 폐기하십시오

다. 유해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·위험성

○ **제품 NFPA 등급**

(※ 0-불충분, 1-약간, 2-보통, 3-높음, 4-매우높음)

제품명	보건 Health	화재 Flammable	반응성 Reaction
Techsol - 2836	2	2	0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(異名)	CAS No.	KE No.	함유량(%)
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	Hydrodesulfurizedmiddle distillate (petroleum)	64742-80-9	KE-12538	100

4. 응급조치요령

- 가. 눈에 들어갔을 때**
 -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내시오.
 -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십시오.
-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**
 -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를 씻어내시오.
 -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십시오.
 - 오염된 모든 의복은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십시오.
- 다. 흡입했을 때**
 - 과량의 먼지 또는 흠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십시오.
 - 물질을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십시오.
 -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십시오.

-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.
- 토하게 하지 마시오.

- 라. 먹었을 때**
- 물질을 먹었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십시오.
 -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 -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.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.

- 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**
-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- 가. 적절한(부적절한) 소화제**
-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,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.
 -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.
 - 고압주수 (부적절한 소화제)
 - 직접주수 (부적절한 소화제)

-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**
- 화재시 자극성, 부식성,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.
 - 가열하면 화재 또는 폭발할 수 있음.

- 다.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**
-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 - 화재 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,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을 끄시오.
 -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.

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-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**
- 보호구 항(「8.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」항 참조)의 예방조치를 하고, 옆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시오.
 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.
 -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.
 -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.

-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**
- 다량 누출시 수로, 하수구, 지하실,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십시오.
 -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.

- 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**
- 불활성 물질(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)로 옆지른 것을 흡수하고,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.
 -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.
 -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.
 -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.
 - 분말 누출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.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- 가. 안전취급요령**
-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/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.

-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.
- 가열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호흡하지 마시오.
-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.
-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.
-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.
-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.

나. 안전한 저장방법

-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.
- 열·스파크·화염·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. - 금연
-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.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화학물질명	국내규정	ACGIH 규정	OSHA 규정	생물학적 노출기준
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	자료없음	자료없음	자료없음	자료없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시오.
-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오.

다. 개인보호구

○ 호흡기 보호

- 노출농도가 100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.
- 노출농도가 250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 (loose-fitting) 후드/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/방독마스크 (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)를 착용하시오.
- 노출농도가 500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/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.
- 노출농도가 10,000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/후드 타입,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.
- 노출농도가 100,000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(SCBA)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(SCBA)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.
- 해당물질의 노출농도가 노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, 노출되는 기체/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.

○ 눈 보호

-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(샤워식)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.
-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.

○ 손 보호

-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 장갑을 착용하시오.

○ 신체 보호

-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 의복을 착용하시오.

9. 물리화학적 특성

항목	입력값
외관	액체
색상	무색
냄새	탄화수소냄새
냄새역치	자료없음
pH	자료없음
녹는점/어는점	-35 °C
초기 끓는점과 끓는점범위	280 ~ 370 °C
인화점	150 °C
증발속도	자료없음
인화성(고체,기체)	해당없음
인화폭발범위	0.9~2.5 ~ 6~16.1
증기압	0.003 mmHg (at 25°C)
용해도	자료없음
증기밀도	>1
비중	0.83~0.86
분배계수	자료없음
자연발화온도	>210 °C
분해온도	자료없음
점도	5.95 mm ² /s (at 40°C)
분자량	자료없음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- 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-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.
- 화재시 자극성, 부식성,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.
- 나. 피해야 할 조건 - 열, 스파크, 화염, 마찰, 충격, 오염 등 점화원
- 다. 피해야 할 물질 - 가연성 물질
- 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-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.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호흡기를 통한 흡입
- 흡입하면 유해함

- 흡입을 통해 신체 흡수 가능

○ **피부접촉**

-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
- 피부를 통해 신체 흡수 가능

○ **눈 접촉**

-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
- 눈을 통해 노출 가능성이 있음

○ **입을 통한 접촉**

-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

- 흡입을 통해 신체 흡수 가능

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○ **급성독성**

* **경구 - 분류되지 않음 (ATEmix > 2000 mg/kg)**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랫드(암/수); LD50 > 5000 mg/kg bw, 사망없음 (OECD TG 401, GLP) (ECHA)

* **경피 - 분류되지 않음 (ATEmix > 2000 mg/kg)**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토끼(암/수); LD50 > 2000 mg/kg bw, 사망없음 (OECD TG 402, GLP) (ECHA)

* **흡입(가스) - 해당없음**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* **흡입(증기) - 분류되지 않음 (ATEmix > 20 mg/L)**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자료없음

* **흡입(분진, 미스트) - 분진/미스트 (ATEmix = 1.5 mg/L)**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랫드(암/수); 에어로졸 흡입; LC50 = 4.6 mg/L air /4h (OECD TG 403, GLP) (ECHA)

○ **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: 구분 2 (피부자극성 구분2)**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부식성/자극성 시험결과, 자극성 유발 (OECD TG 404, GLP) (ECHA)

○ **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: 분류되지 않음**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토끼를 대상으로 심한 눈손상/자극성 시험결과, 비자극성 (OECD TG 405, GLP) (ECHA)

○ **호흡기과민성 : 분류되지 않음**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자료없음

○ **피부과민성 : 분류되지 않음**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피부과민성 시험결과, 비과민성 (OECD TG 406, GLP) (ECHA)

○ **발암성 : 분류되지 않음**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EU CLP 1272/2008: Carc. 1B(Note N: 본 분류는 모든 정제 이력을 알 수 있어서 어느 물질에서 생산된 것인지 증명된다면 발암성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음. 이 NOTE는 복합 오일에서 추출된 물질에만 적용함) (ECHA)

○ **생식세포변이원성 : 분류되지 않음**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시험관 내 박테리아 복귀돌연변이시험 (OECD TG 471, GLP) 및 포유류세포 유전자

hydrodesulfurized middle 돌연변이시험 (OECD TG 476)결과, 모두 음성 (ECHA)
생체[내 포유류 골수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결과, 음성 (OECD TG 475) (ECHA)

○ **생식독성 : 분류되지 않음**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랫드(암/수)를 대상으로 165 (20%), 330 (40%), 494 (60%) mg/kg/day의 농도로 생식/발달독성 스크리닝시험결과, 본 물질은 생식 또는 발달독성을 유발하지 않음 (OECD TG 421) (유사물질 자료 : 64742-81-0) (ECHA)

○ **표적장기-전신독성물질(1회노출) : 분류되지 않음**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랫드(암/수)를 대상으로 급성경구독성시험결과, 약독성 징후로서 활동저하, 뇨로 더러워진 복부, 기름져 보이는 털 관찰됨. LD50 > 5000 mg/kg bw, 사망없음 (OECD TG 401, GLP) (ECHA)
토끼(암/수)를 대상으로 급성경피독성시험결과,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. LD50 > 2000 mg/kg bw, 사망없음 (OECD TG 402, GLP) (ECHA)
랫드(암/수)를 대상으로 급성흡입독성시험결과, 투여군의 폐에 육안적 충혈에 용량 관련 증가 관찰됨. LC50 = 4.6 mg/L air /4h (OECD TG 403, GLP) (ECHA)

○ **표적장기-전신독성물질(반복노출) : 분류되지 않음**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랫드(암/수)를 대상으로 0, 8, 25, 125, 500, 1,250 mg/kg/day의 농도로 90일간 반복경피독성시험결과, 체중 감소, 흉선 무게 감소, 간 무게 증가 관찰되었고, 심각한 흥반과 부종 또한 관찰됨. NOEL=25 mg/kg/day(수컷), 125 mg/kg/day(암컷)으로 설정됨 (OECD TG 411) (유사물질 자료 : 64741-59-9) (ECHA)
랫드(암/수)를 대상으로 0, 0.35, 0.88, 1.71 mg/L의 농도로 13주간 반복흡입독성시험결과, 보수적 아만성 NOAEC(폐에 대한 국소 영향) = 0.88 mg/L (조직병리학적 변이 없이 상대 습중량 증가에 근거), 이 농도에서 유의미한 전신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NOAEC (전신영향) >= 1.71 mg/L으로 설정됨 (OECD TG 413) (유사물질 자료 : Diesel fuel) (ECHA)

○ **흡인유해성 : 구분 1**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>= 2 - 8.1 mm²/s (40°C) (ECHA)의 동점도를 갖는 탄화수소류임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생태독성

-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: 분류되지 않음 (ATEmix>1mg/L)
-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: 구분 2

○ **급성 수생 환경유해성**

어류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96h-LL50(Oncorhynchus mykiss) = 21 mg/L (OECD TG 203, GLP)

갑각류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48h-EL50(Daphnia magna) = 210 mg/L (OECD TG 202, GLP) (유사물질 자료) (ECHA)

조류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72h-ErL50(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) = 22 mg/L (OECD TG 201) (유사물질 자료) (ECHA)

○ **만성 수생 환경유해성**

어류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자료없음

갑각류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자료없음

조류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72h-NOEL(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) = 1 mg/L (OECD TG 201) (유사물질 자료) (ECHA)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○ 잔류성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log Kow = 10.16 (예측치) (EPISUITE); 유효하지 않은 자료 (" $-4 < \log Kow < 8$ " 의 범위 초과)

○ 분해성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자료없음

다. 생물농축성

○ 생물농축성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BCF = 94.94 (예측치) (EPISUITE)

○ 생분해성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28일 후 34.82% 생분해됨; 난분해성 (EPA OTS 796.3100) (ECHA)

라. 토양이동성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Koc = 676800000 (EPISUITE)

마. 오존층 유해성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바. 기타 유해 영향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분류되지 않음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

-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고, 분리한 후 남은 물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시오.
- 증발·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시오.
- 응집·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.
- 분리·증류·추출·여과·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 처리하시오.
-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 하시오.
-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분하시오.

나. 폐기시 주의사항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 방지법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시오.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에 명시된 처리 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.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유엔번호(UN No.)

- 해당없음

나. 적정선적명

- 해당없음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

- 해당없음

라. 용기등급

- 해당없음

마. 해양오염물질

- 해당됨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

-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: 해당없음

-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: 해당없음

- 육상/해상/항공 운송규제사항(ADR/RID, AND, IMDG, ICAO/IATA)에 의한 분류 및 규제 : 해당없음

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- PRODUCT : 해당없음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다. 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 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라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- PRODUCT :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, 2000L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, 2000L

마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- PRODUCT : 지정폐기물- 폐유(액체상태)

바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○ 고압가스안전관리법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○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○ EU 규제정보

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EU 분류정보(위험문구)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EU 분류정보(안전문구)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REACH 제한물질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REACH 제한물질

REACH 허가대상물질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REACH SVHC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EU PBT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○ 미국 규제정보

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미국관리정보(EPCRA 302 규정)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미국관리정보(EPCRA 304 규정)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미국관리정보(EPCRA 313 규정)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○ 국제협약 정보

로테르담 협약물질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스톡홀름 협약물질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몬트리올 의정서물질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○ National Inventory

유럽 기존화학물질 Inventory(EINECS)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유럽 EINECS 기존화학물질

유럽 신고화학물질 Inventory(ELINCS)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미국 기존화학물질 Inventory(TSCA)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미국 TSCA 기존화학물질

중국 기존화학물질 Inventory(IECSC)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중국 기존화학물질

일본 기존화학물질 Inventory(ENCS)

- 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desulfurized middle : 해당없음

16. 기타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

- 본 MSDS는 내부 기술데이터 및 OECD eChemPortal, ECHA, NITE, TOXNET, IPCS, KOSHA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.

나. 최초작성일자

- 2008-07-25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
○ 개정횟수

- 6

○ 최종 개정일자

- 2025-12-31

○ 최종개정이력

- 2025년 GS칼텍스 제조제품 MSDS 정기 개정
 -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50호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-19호 내용 반영
 - 최신 GHS data 반영하여 유해위험성 재계산 하였으나 변동사항 없음

라. 기타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50호(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함. 본 MSDS에 포함된 정보는 당사의 최신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안전취급 관련 정보에 대해서만 기술한 것이며, 본 MSDS는 제품의 기술자료(TDS), 시험 성적서(CoA) 및 규격합의서로(Specification agreement) 사용될 수 없음. 본 제품의 사용자는 현행 법률이 정한 규정을 확인하여 준수할 책무가 있음.